

일본의 헤이트 스피치 금지 입법 추진과 표현의 자유

이진석

전 동아일보 기자
일본 와세다대학교 국제커뮤니케이션학 석사과정

재일(在日) 한국인을 겨냥한 일본 우익단체들의 증오 발언, 헤이트 스피치(hate speech)를 바라보는 한국인의 시선에는 분노와 의아함이 교차한다. 입에 담기 힘든 인종차별적 폭언이 대낮 도심 한복판에서 쏟아져도 별 다른 제재 없이 이를 방관하는 일본 사회의 모습은 쉽게 이해하기 힘든 현상이다. 헤이트 스피치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면서 최근 일본에서는 표현의 자유를 어디까지 허용해야 하는지를 두고 격론이 벌어지고 있다.

일본 국회는 올 8월부터 야당이 재일(在日) 외국인에 대한 차별을 금지하기 위해 제출한 ‘인종차별 철폐시책 추진법안(人種差別撤廢施策推進法案)¹⁾’의 심의에 들어갔다. 2020년 도쿄올림픽 개최를 앞두고 헤이트 스피치에 대한 국제사회의 우려를 불식시켜야 한다는 여론이 조성되면서부터다.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법적 배경에 대해 일본 사회는 그 필요성을 인식하면서도 좀처럼 타결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본고에서는 전후 일본의 표현의

자유 발전 양상과 헤이트 스피치와의 인과관계, 이에 대한 규제 방법으로서 입법 절차에 들어간 인종차별 금지 법안의 개요와 법적 쟁점 및 실효성을 살펴보고자 한다.

헤이트 스피치는 표현의 자유인가

2009년 12월 재일특권을 허용하지 않는 시민의 모임(이하 ‘재특회’)이 교토(京都) 제1조선 초급학교 앞에서 벌인 인종차별 시위를 시작으로 재일 한국인을 대상으로 한 헤이트 스피치가 지난 수년간 일본 전국 각지에서 행해졌다. 이들이 도심을 자유로이 활보할 수 있었던 까닭은 일본 헌법이 보장하는 광범위한 표현의 자유에 있었다. 일본 사회의 우경화 우려를 낳고 있는 헤이트 스피치는 역설적이게도 전후 일본 민주주의의 발전 과정에서 태동한 무제한적 표현의 자유가 낳은 이단아라 할 수 있다.

제2차 세계대전 종전 후 일본에 주둔하던 연합국 최고사령부(GHQ)는 당시 ‘대일본제국헌법(일

1) 정식 명칭은 ‘인종 등을 이유로 한 차별의 철폐를 위한 시책 추진에 관한 법률안(人種等を理由とする差別の撤廢のための施策の推進に関する法律案)’.

명 메이지헌법’ 개정 과정에서 이전까지 사문화되어 있던 집회·결사 및 표현의 자유 보장을 적극적으로 요구했다. 천황 주권의 대일본제국 헌법을 민주주의적으로 해석하는 ‘다이쇼 데모크라시(大正デモクラシー)’에서 한 발 더 나아가 천부인권 사상을 도입한 것이다. 사상의 획일화와 천황제가 군국주의를 다시 부추길 가능성을 우려한 미군정은 정치와 종교적 자유에 대한 제한을 철폐할 각서(일명 ‘자유’의 지령)를 일본 정부에 교부했다. 일본 황실과 정부에 대한 토론을 포함한 사상과 집회, 언론의 자유를 보장함으로써 전후 일본에 민주주의를 확산시키려 한 것이다.



일본 도쿄 도심에서 벌어지고 있는 재특회의 시위 모습. 2020년 도쿄올림픽 개최를 앞둔 일본 사회에서는 헤이트 스피치를 법적으로 규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출처 : <http://joshuayu.tistory.com/468>)

관련 법 조항의 구체적인 변화를 살펴보자. 대일본제국헌법 제29조는 ‘일본 신민은 법률의 범위 안에서 언론, 저작, 출판, 집회 및 결사의 자유를 지닌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법적 근거가 있

으면 인권을 제한할 수 있다는 법률 유보의 원칙(Vorbehalt des Gesetzes)에 의해 제약되는 권리였다. GHQ 초안에 의해 개정된 일본국 헌법 제21조²⁾에서는 ‘법률의 범위’라는 문구가 삭제되었을 뿐만 아니라 검열을 금지하고 통신의 비밀을 보장하는 조항이 더해졌다. 대일본제국헌법이 지녔던 표현의 자유의 한계를 모두 해제한 셈이다.

전후 고도 경제성장에 들어선 일본은 국제사회에서 민주주의 국가로서의 신용을 회복해야 한다는 과제를 갖고 있었다. 이를 위해서는 전쟁을 금지하고 인권을 보장하는 평화헌법의 수호의지를 적극적으로 내보여야 했다. 전후 일본사회의 발전은 관료가 설계를 주도하는 관료주의(bureaucracy)였음에도 언론과 출판, 예술 등 민간영역에서는 검열이나 사전 심의의 제한에서 상대적으로 자유를 향유할 수 있었다. 다시 말해 정치적 보수성과 문화적 진보성이 혼재된 셈이었다. 최근 일본 사회의 우경화 조짐과 더불어 표현의 자유에 대한 논란이 벌어지고 있는 까닭은 이러한 모순적 구조에서 그 이유를 짐작해 볼 수 있다.

2011년부터 지난해 상반기까지 도쿄 주일 한국대사관 및 신오쿠보 한인 거리 등지에서 벌어진 혐한 시위는 349건³⁾에 달했다. 이에 대한 직접적인 제재는 전무한 상황이다. 재특회의 혐한 시위에 대한 처벌은 판결문에 인종차별철폐 국제조약 위반이 언급되긴 하였으나, 결과적으로는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죄’와 형법상 모욕죄로 배상 명령⁴⁾을 받았을 뿐이다.

2) 일본국헌법 제21조 제1항 집회, 결사 및 언론, 출판 기타 일체의 표현의 자유는 보장된다. 제2항 이는 검열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되며 통신의 비밀이 침해되어서는 안 된다.

3) 새정치민주연합 심재권 의원실 자료

4) 일본, 교토지방법판소(2013. 10. 7.) 2010.(7) 제2655호 「가두선전금지등청구사건」 판결 전문은 http://www.courts.go.jp/app/files/hanrei_jp/675/083675_hanrei.pdf

인종차별 금지 입법 놓고 여야 진통

헤이트 스피치가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되면서 일본의 지식인과 시민들 사이에서는 이를 법적으로 규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2020년 도쿄올림픽 개최를 앞두고 있는 일본 정부도 유엔 인종차별 철폐위원회의 인종차별 대처 권고 등 점차 확산되는 국제사회의 우려의 시선에 압박감을 느끼고 있다.

일본 민주당과 사회민주당이 올 5월 참의원에 제출한 인종차별 철폐시책 추진법안은 이 같은 사회 분위기를 반영하고 있다. 민주당 오가와 토시오(小川敏夫) 참의원 의원(인종차별철폐 기본법을 요구하는 의원연맹 회장)은 법안 개요에 대해 “(1965년 유엔에서 채택된) 인종차별철폐조약을 기본으로 삼은 법안으로, 인종차별의 행위 중 하나로서 헤이트 스피치를 금지하는 내용을 담았다”고 설명했다. 아리타 요시후(有田芳生) 민주당 참의원은 “중요 연설을 방지하면 국제적으로 일본이 인권을 경시하고 있다는 낙인이 찍히게 될 것”이라고 했다. 한국계인 백진훈(白眞勳) 민주당 참의원은 “곧 올림픽이 열리는 국가에서 여전히 인종차별 시위가 벌어지는 것은 부끄러운 일”로 “이를 멈추기 위한 법률이 필요하다”고 했다.⁵⁾

일본의 인종차별 철폐시책 추진법안은 1965년 12월 21일 유엔 총회에서 채택되어 1969년 1월 4일 발효된, ‘모든 형태의 인종차별 철폐에 관한 국제조약(Convention on the Elimination of All Forms of Racial Discrimination)’⁶⁾을 모태로 삼고 있다.

조약 전문은 식민주의와 이로 인해 파생되는 인종차별을 비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조약에서 말하는 인종차별이란 “인종, 피부색, 가문 또는 민족이나 종족의 기원을 둔 어떠한 구별, 배척, 제한 내지는 우선권”을 말한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또는 기타 어떠한 공공생활의 분야에서든 평등하게 인권과 기본적 자유의 인정, 향유 또는 행사를 무효화시키거나 침해하는 목적 또는 효과를 가지고 있는 경우”를 인종차별 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유엔의 인종차별 철폐조약에 가입한 국가는 전세계 173개국으로 한국은 1978년, 일본은 다소 늦은 1995년에 가입했다. 다만 일본은 이 조약을 제한적으로 받아들이고 있으며 일부 조항에 대해서는 유보 입장을 취하고 있다. 예컨대 제4조 “인종차별주의 또는 혐오를 기반으로 하는 모든 사상의 유포”와 “인종차별의 선동”에 대해 처벌 입법 조치를 의무화하는 조항의 경우, “이는 다양한 상황에서 다양한 형태의 행위를 포함한 매우 넓은 개념”으로 “형벌로 규제하는 것은 헌법이 보장하는 집회, 결사, 표현의 자유 등을 부당하게 제약할 수 있으므로 매우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⁷⁾는 게 일본 정부의 입장이다. 조약 가입에 따른 법적 구속력 또한 “이 조약상의 의무는 일본국헌법을 비롯한 현행 국내 법제에서 이미 담보되어 있다”고 선을 긋고 있다.

유엔 인종차별 철폐조약 제4조에 대한 일본의 유보적인 입장은 표현의 자유와 관련이 있다. 일본 정부는 해당 조항이 “정당한 언론을 부당하게 위축시킬 수 있으며, 이 같은 개념을 처벌 법규의 구성요

5) 일본 민주당 홈페이지, 2015. 5. 22. ‘인종 차별 철폐 시책 추진 법안을 참의원에 제출’(<https://www.dpj.or.jp/article/106750>)

6) 전문은 유엔인권최고대표사무소 홈페이지(<http://www.ohchr.org/EN/ProfessionalInterest/Pages/CERD.aspx>) 참조

7) 일본 외무성 홈페이지 <http://www.mofa.go.jp/mofaj/gaiko/jinshu/top.html>

건으로 이용할 경우 처벌의 대상이 되는 행위와 그렇지 않은 행위의 경계가 명확하지 않으며 죄형법정주의 위배 여부 또한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는 이유로 유보 입장을 취하고 있다고 밝혔다. 일본에서는 명예훼손과 모욕 등 구체적인 법의 침해에 해당하는 표현에 한해 표현의 자유가 제한되고 있지만, 해당 조약에 따라 차별 입법 의무를 이행할 경우 헌법상의 문제를 초래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해당 조항은 일본 외에도 미국과 스위스가 유보, 영국과 프랑스 역시 소극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다.

다시 일본 국회에서 심의 중인 인종차별 철폐법안을 살펴보자. 총칙 제1조에 서술된 법안의 기본 취지는 “인종 등을 이유로 한 차별의 철폐가 중요한 과제임을 감안하여 일본국헌법 및 모든 형태의 관련 국제협약 이념에 따라 인종차별 금지 등의 기본 원칙을 정하는 것과 동시에, 차별의 방지에 관한 국가 및 지방공공단체의 책무 등 기본이 되는 사항을 정하는 것”이다. 대략적인 법안의 골자는 1) 특정 사람에게 인종이나 민족을 이유로 한 차별적 취급과 언동을 해서는 안 됨 2) 인종 등의 공통 속성을 가진 불특정자에게 현저하게 불안과 불편을 줄 목적으로 공공연하게 차별적 언동을 해서는 안 됨 3) 국가 및 지방 자치 단체는 차별 방지 시책을 수립 4) 정부 시책에 대해 국회에 매년 보고 5) 국가는 차별 실태에 대한 공개 조사를 실시 6) 지식인으로 구성된 ‘인종 등 차별방지 정책 심의회’를 내각부에 설립하는 내용을 담았다.⁸⁾

이 법안은 인종차별에 대한 실질적인 처벌을 규

정하지 않는 이념적 법률이다. 따라서 실질적으로 헤이트 스피치를 규제하는 효과를 얻기 위해서는 입법 이후 법 조항의 해석과 실제 적용이 전제되어야 한다. 일본 헌법학자들은 헤이트 스피치의 법적 규제에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규제의 대상이 모호하다는 점에서도.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는 관점에 있어서도 법리를 문제삼는 의견이 나온다. 일본 국회에서는 큰 틀에서 법안의 기본적인 취지에 동감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지만, 신중론 또한 만만치 않다. 실효성에 대한 의구심 역시 해소되지 않은 상태다. 특히 표현의 자유에 대한 정부의 규제 권한이 늘어나면 언론 통제에 악용될 가능성이 있다는 의견도 나온다.

8월에 열린 해당 법안의 참의원 심의에서는 야당의 입법 제안으로서는 드물게도 여야 양측에서 일치된 의견이 나왔다. “헤이트 스피치는 허용되지 않는다”는 대전제에 동의한 것이다. 다만 공명당은 해당 법안의 대안으로 인종차별 전반에 대한 규제가 아닌 중요연설 방지 이념법을 낸다는 방침을 내세웠다. 법안 입법에 앞서 일본 사회에서 인종차별의 구체적인 실태 조사가 선행되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이 점에 대해서는 법안을 발의한 민주당도 비슷한 인식을 갖고 있다. 야구라 가즈오(矢倉克夫) 민주당 의원은 마이니치신문(毎日新聞)과의 인터뷰에서 “헤이트 스피치의 정의와 입법의 근거, 영향을 치밀하게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⁹⁾

일본 국회가 헤이트 스피치의 문제성을 공유하면서도 쉽사리 의결에 나서지 못하는 이유는 법안

8) 법안 전문은 <https://www.dpj.or.jp/download/21050.pdf>

9) 『毎日新聞』, 2015. 8. 24. “Listening : <人種差別撤廃法案> 公明、対案提出へ 自民は方針検討中”, <http://mainichi.jp/journalism/listening/news/20150824org00m010004000c.html>(검색일: 2015. 9. 1.)

과 표현의 자유 사이의 균형 문제 때문이다. 유신당은 “법안이 금지하는 차별의 정의에는 구체성이 결여되어 있다”면서 “추상적인 범위가 확대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일본공산당도 “자의적인 해석 확대로 규정이 남용될 가능성을 없애려면 금지행위의 명확한 정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결정적으로 입법의 향방을 손에 쥐고 있는 자민당은 협의에 나서면서도 이렇다 할 대응 방침을 내놓지 않는 미온적인 상태다.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는 올 2월 헤이트 스피치를 비판하는 취지의 발언을 한 바 있지만 규제에 대해서는 “개별적인 사안을 검토해야 하며 하나로 통틀어 말하는 것은 곤란하다”고 말했다. 내각부에 심의회를 두고 조사나 권고 권한을 부여하는 조항에 대해 공명당은 “어떤 표현이 위법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판단을 권력 쪽에 맡기는 것은 위험하다”면서 반대를 표명했다.



올 5월 인종차별 철폐법안을 참의원에 제출한 일본 야당 의원들. 법안은 여야간 격론 끝에 올해 회기 내 처리가 불투명한 상태다.
(출처 : 일본 민주당 홈페이지 <http://www.dpj.or.jp/article/106750>)

결국 해당 법안은 올해 일본 정기국회를 통과하지 못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아사히신문(朝日新聞)은 자민·공명이 인종차별 철폐법안에

대한 표결을 9월 27일까지인 정기국회 회기 중 실시하지 않을 방침을 굳혔다고 보도했다. 표현의 자유와 인종차별적 발언에 대한 규제를 어떻게 양립시킬 것인가를 두고 이견을 좁히지 못한 탓이다.

찬반 맞서는 일본 법조계

인종차별 철폐법안에 대해서는 일본 법조계에서도 찬반양론이 엇갈리고 있다. 해당 법안은 처벌 규정을 따로 두지 않는 이념 법이지만, 표현의 자유의 우월적 지위와의 충돌 여부가 논란의 핵심이다.

헤이트 스피치의 법적 규제의 필요성에 대한 의견에는 주로 ‘명백하고 현존하는 위험(clearandpresentdanger)’의 범리가 검토된다. 미국 브란덴버그(Brandenburg) 판결에서 판시된 바와 같이, ‘임박한 무법적 행동(imminent lawless action)’을 선동하거나 그럴 우려가 있는 표현이 담기지 않는 이상, 언론의 자유를 사후 제한할 수 없다는 원칙¹⁰⁾이다. 헤이트 스피치의 법적 규제에 대해 신중론을 펼치고 있는 일본 헌법학자 아가사가 마사히로(赤坂正浩) 릿쿄대(立教大) 교수는 브란덴버그 원칙에 입각할 경우 선동적 표현의 자유와 소수자에 대한 차별, 배척, 증오, 모욕 등을 내용으로 하는 표현도 국가로부터 방해받지 않는 시민의 권리라는 관점에서는 ‘차별적 표현의 자유’에 해당한다고 본다. 특히 일본에서는 미디어의 과도한 자율규제가 표현의 자유에 대한 위축 효과(chilling effect)를 불러일으킬 수 있음을 주의해야 한다고 주장한다.¹¹⁾

10) 미국, 연방대법원, Brandenburg v. Ohio, 395 U.S. 444 (1969)

11) 赤坂正浩, 2011, 『憲法講義(人權)』(信山社)

헤이트 스피치의 법적 규제에 찬성하는 헌법학자들은 대항언론의 부재를 이유 중 하나로 꼽는다. 표현의 자유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언론에는 언론으로 대항한다’는 대항언론의 원칙에 따라 평등한 입장에서 반론이 가능해야 하는데, 차별 대상자들이 현실적으로 이를 성립시키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예컨대 일본인인 인종차별주의자들이 일본 도심에서 ‘재일 한국인들은 돌아가라’고 외칠 때, 재일 한국인에게 대응해 ‘당신들이나 돌아가라’고 하더라도 대등한 입장에서 항변이 될 수 없다는 것이다.

신중론자들은 헤이트 스피치의 법적 규제가 가능케 되면 공권력이 표현의 자유에 개입할 여지가 생겨날 수 있음을 우려한다. 실제로 자민당은 지난해 헤이트 스피치 대책 프로젝트 회의에서 국회 주변에서 벌어지는 반대 시위도 규제 대상으로 검토해야 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해 이 같은 우려를 확산시켰다.

‘헤이트 스피치란 무엇인가(ヘイトスピーチとは何か)’라는 저서를 쓴 모로오카 야스코(師岡康子) 변호사는 “정부 비판 시위와 집회를 헤이트 스피치와 동일 선상에 두는 것은 표현의 자유에 대한 몰이해”라고 비판했다. 모로오카 변호사는 표현의 자유 위축 우려에 대해서도 “과거 재특회의 교토 초급학교 시위 사건 판례 등을 바탕으로 인종차별에 해당하는 발언과 행위를 규정하는 상세한 지침을 만들면 위축효과를 억제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를 위해 ‘명확성의 원칙’이 검토되고 있다. 차별적 표현이란 무엇인지를 명확히 제시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도쿄변호사회는 9월 8일

‘인종차별을 목적으로 하는 공공시설의 이용 허가 신청에 대해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하는 의견서’를 내고 구체적인 지침을 내놨다. 지방자치단체에서 헤이트 스피치를 위한 공공시설 이용 신청을 두고 고심하고 있다는 점에 착안해, ‘이용 신청서에 특정 민족에 대한 모욕적인 표현을 포함하는 등 차별적인 언동의 우려가 명백한 경우 지자체는 이용을 거부 할 수 있다’는 지침을 정리한 것이다. 일례로 2014년 4월 오사카에서 접수된 한 배타주의 단체의 공공시설 사용신청서를 보면 ‘조선인 자제들에게 학교 급식으로 배설물을 먹이는 모임’이 주최 단체로 되어 있는데, 이 경우 이용 거부 요건에 명백히 해당한다고 도쿄변호사회는 설명했다. 도쿄변호사회는 조만간 이 지침을 도쿄도내 지자체에 보내고 판단의 참고로 삼을 것을 요청할 계획이다. 이토 시게아키(伊藤茂昭) 도쿄변호사회 회장은 “표현의 자유는 중요하지만 헤이트 스피치는 간과할 수 없다”고 말했다.¹²⁾

언론 보도, 소셜미디어에도 영향 미칠까

헤이트 스피치의 법적 규제는 표현의 자유와 밀접한 연관이 있다. 따라서 인종차별 철폐법안이 입법화될 경우 향후 언론사의 보도 행태에도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해 최근 주목할만한 사례를 소개한다. 일본 실시간 동영상 사이트인 니코니코동화(ニコニコ動画)는 올 5월 재특회의 유료 공식채널을 약관 위반으로 폐쇄했다. 지난해 12월 개설된 니코니코동

12) 도쿄변호사회 홈페이지 “地方公共団体に対して人種差別を目的とする公共施設の利用許可申請に対する適切な措置を講ずることを求める意見書”(http://www.toben.or.jp/message/ikensyo/post-412.html) 참조

회의 재특회 채널은 제일 한국인에 대한 원색적 비난과 인종차별 발언을 여과 없이 게재해 왔다. 이에 대해 우즈노미야 겐지(宇都宮健児) 전 일본 변호사 연합회 회장과 무라야마 도미이치(村山富市) 전 일본 총리 등이 설립한 ‘노리코에넷’(のりこえねっと)은 올 1월 니코니코동화의 운영업체인 드와고에 채널 폐쇄를 요청했다. 교도통신(共同通信)은 드와고 측이 ‘미풍 양속, 일반 상식에 반하는 행위’ 등 금지 규약 위반을 이유로 재특회 채널을 폐쇄했다고 보도했다. 헤이트 스피치의 법적 규제가 정착되면 이와 유사한 사례가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혐한(嫌韓) 미디어의 행보에도 제동이 걸리게 되는 것이다.

아울러 일본 언론에서 인종차별이라는 비판을 받았던 일부 보도 사례의 후속 대응을 살펴보자. 극우 성향의 일본 산케이신문(産経新聞)은 올해 2월 11일자 조간신문 7면에 작가 소노 아야코(曾野綾子)의 칼럼을 게재했다. 칼럼은 인종에 따라 거주지역을 분리한 남아프리카공화국의 ‘아파트헤이트(Apartheid·유색인종 격리정책)’를 일본에 도입하자는 취지를 담고 있다. 소노 아야코는 아베 총리의 교육정책 자문을 맡고 있다. 모하우 페코 주일 남아공 대사는 산케이신문에 보낸 항의문에서 “인종차별을 허용하지는 부끄러운 제안”이라고 비판했다. 산케이신문은 항의문 접수 사실을 보도하며 편집국장 명의로 “칼럼은 개인 의견이며 인종차별은 허용되어서는 안 된다”는 답변¹³⁾을 실었지만, 신문사의 공식 사과나 이를 강제할 법적 규제도 없었다.

요미우리신문(読売新聞) 계열의 스포츠 일간지 스포츠호치(スポーツ報知)는 8월 12일자 기사에서



올 5월 규약 위반으로 폐쇄된 일본 동영상사이트 '니코니코동화'의 재특회 채널 캡처.



일본 산케이신문(産経新聞) 2015년 2월 11일자에 게재된 작가 소노 아야코의 칼럼. 인종 별로 거주지역을 나누는 인종 격리정책 도입을 시사해 논란을 낳았다.

혼혈 고교 야구선수를 아프리카의 동물에 비유해 비판을 받았다. 나이지리아 출신 부친을 둔 관동제 일고등학교의 오코에 루이(オコエ瑠偉) 선수의 일본 전국 고교야구 선수권대회 활약을 “선수권대회의 사바나(savanna)화”, “굶주린 야수의 본능을 노출해 그라운드를 누볐다” 등의 표현을 사용하여 묘사했다. 논란이 확산되자 스포츠호치는 인터넷상에서 기사를 삭제하는 것으로 무마했다. 스포츠호치는 허핑턴포스트 일본판 등 여타 언론의 문기에 “비판을 진지하게 받아들인다”고 밝혔지만 공식적

13) 「산케이신문」, 2015. 2. 14. “曾野氏コラムで南ア駐日大使が本紙に抗議”, <http://www.sankei.com/life/news/150215/lif1502150017-n1.html>(검색일: 2015. 9. 1.)

인 조치는 취하지 않았다.¹⁴⁾

하시모토 도루(橋下徹) 오사카 시장이 자신의 출생배경을 보도한 언론사를 제소해 승소한 '주간 아사히(週刊朝日) 하시모토 도루 특집기사 문제'는 인종차별 논란을 빚은 언론 보도와 관련한 흔치 않은 판례다. 주간 아사히는 2012년 10월 26일호 수록 기사에서 하시모토 시장의 부친이 과거 일본의 신분제도 최하층이었던 부락주민(部落民) 출신임을 보도했다. 하시모토 시장은 "유전자에 의해 성격이 결정된다는 혈맥주의적 기사"라며 반발했다. 하시모토 시장이 제소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은 주간 아사히의 합의금 지불로 올해 2월 18일 오사카 지방 법원에서 화해가 성립됐다.

다만 이는 개인의 명예훼손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라는 형태로, 재특회 사건과 마찬가지로 인종차별 문제에 대한 직접적 판결은 아니다. 주간 아사히의 출판사인 아사히신문출판의 모회사 아사히신문사는 제3자 기관인 '보도와 인권위원회' 견해에 따른 사과문을 게재했다. 보도와 인권위원회는 아사히신문사가 자사 보도에 대한 불만사항을 심리하기 위해 설치한, 외부 전문가들로 구성된 독립기관이다. 한국의 언론중재위원회와 같은 공공기관이 없고, 보도에 따른 분쟁을 언론사의 자율규제에 맡기는 일본 언론계의 특성이 반영된 실태다.

이밖에 일본 소수민족인 아이누(アイヌ)족들로 구성된 사단법인 홋카이도(北海道) 아이누 협회가 니혼TV의 쇼프로그램 '비트다케시의 웃음 울트라 퀴즈(ビートたけしのお笑いウルトラクイズ)'에서 아이누족을 희화화 했다는 이유로 항의에 나서고,

오키나와 원주민들이 일부 언론사의 오키나와(沖縄) 관련 보도에 대해 차별적 보도 행태를 문제로 삼는 경우도 있지만 이를 해결할 수 있는 직접적인 법적 규제는 없는 실정이다. 인종차별 금지법안도 도입되면 이 같은 사안에 대해 어떤 법리 해석이 적용될지 귀추가 주목된다.

맺으며

일본 사회의 인종차별 철폐법안 입법을 둘러싼 논란은 국제사회로부터 주목받고 있다. 유엔 인종차별철폐위원회가 작년 8월 일본정부에 인종차별금지법 제정과 함께 헤이트 스피치를 규제할 것을 권고한 이래, 표현의 자유 위축 및 규제 남용에 대한 우려와 인종차별 대처의 필요성 등을 두고 벌어지는 논란이다.

국제사회에서는 인종차별에 대한 처벌이 표현의 자유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의견이 대세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4개국 중 30개국이 인종차별에 대한 형사 처벌안을 마련하고 있다. 프랑스 인권선언(Déclaration des droits de l'Homme et du citoyen) 제4조는 자유를 '타인에게 해롭지 않은 모든 것을 행할 수 있음'이라 규정하고 있다. 일본 사회의 여론도 헤이트 스피치는 표현의 자유의 보호 범위 안에 포함할 수 없다는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다. 정부에 헤이트 스피치의 규제를 권고하는 일본 지자체 의회의 결의도 잇따르고 있다. 이런 상황을 방임하는 일본 여당의 행보는 진정한 의미의 표현의 자유를 되보시키는 결과를 가져올 지도 모른다. ▣

14) 『허핑턴포스트 일본판』, 2015. 8. 14. "オコエ瑠偉選手を「野性味全開」本能むき出し」スポーツ報知の記事に批判", http://www.huffingtonpost.jp/2015/08/14/okoe-ru-hochi-report_n_7986326.html(검색일: 2015. 9. 1.)